



제41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조항 신설 〉
- 김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606호)
 - 김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607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요지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은희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2024. 3. 7.
3. 회 부 일: 2024. 3.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2.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등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등 폭력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회구성원 또는 체육계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체육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 및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 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 ·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故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건(2020년) 등을 계기로 성적 지상주의 관점의 외형적인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체육계 인권 향상, 스포츠 비리 근절 등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구축된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구조적 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함.

이를 위해, 2020년 스포츠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각종 비위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법정기구로 설립되었음.¹⁾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3.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운영

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7.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음.

다만, 최근 상담 및 신고 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규모 부족, 직접적인 징계처분 권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인권침해 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²⁾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계 인권 향상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스포츠기본법」이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⑥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⑧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기관 국정감사(2023.10.24.) 구두질의, 서면질의, 정책자료집 등 참고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³⁾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등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법으로, 체육유공자 지정, 복지후생금 지급, 보험 및 공제, 진로지원 등 각종 복지지원을 주로 담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그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함께 입법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거버넌스 확대와 더불어, 기존 법률과의 관계, 법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5

3) 「스포츠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자유롭게 평등하게 참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가치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과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